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공공공지)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43
------------	-----

2015. 12. 1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안 건 명 : 도시계획시설(공원·공공공지)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2. 입안내용

○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공원	역사 공원	광진구 광장동 384-8 일대	37,444	감)37,444	-	2008.11.20. (서고 421호)	
신설	공공 공지	-	광진구 광장동 383-20 일대	-	증)4,473	4,473	-	기존시설 환원

3. 입안사유

- 아차산 고구려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이 당초
구립에서 국립으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 건
립 결정이 지연됨
 -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재산권 장기간 제한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원)을 폐지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은 환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 ※ 공원 결정(폐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7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8조(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4. 도시계획 사항 : 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 공원

5. 주민 의견청취 사항

- 재 신 문 : 2015. 5. 4 매일경제, 전국매일
- 의견청취기간 : 2015. 5. 4 ~ 18 (14일간)
- 공 램 장 소 :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 의견접수사항 : 없음

6. 광진구의회 의견청취 사항

- 의견청취일시 : 2015. 9. 11
- 의견청취결과 : 원안채택

7.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자문일시 : 2015. 9. 22
- 자문결과 : 원안가결

8.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결과

관련부서	관련부서 의견	조 치 계 획	비고
시설 계획과	금희 공원 폐지시 기존 공공공지 부분 환원에 대한 결정 목적 검토 필요	당초 주변 아차산공원 경관과 조화되도록 차단녹지를 조성코자 개발행위허가 조건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공원 폐지시 공공공지 환원이 타당함	반영

9. 편입토지

- 공원 : 총 25필지 37,444 m^2 (사유지 28,067 m^2 , 공유지 9,377 m^2)
- 공공공지 : 총 7필지 4,473 m^2 (공유지)

10. 검토의견

- 이 의견청취안은 2008년 11월 20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역사공원을 폐지하고, 부지 중 자치구 소유토지는 변경 전의 공공공지로 환원(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진구청장이 입안하여 서울시장에게 결정 요청한 사안임.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공원	역사공원	광진구 광장동 384-8 일대	37,444	감)37,444	-	2008.11.20. (서고 421호)	
신설	공공공지	-	광진구 광장동 383-20 일대	-	증)4,473	4,473	-	기존시설 환원

- 이는 당초 구립 고구려박물관 건립계획에 따라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2010.3), 당초 토지매입비가 115억원에서 181억원으로 상승하였고, 구 재정 여건 악화로 토지보상 및 제반 사업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해당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2011.12)하기 위해 사업계획 및 부지를 변경(광장동 5-117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였으나, 전시컨텐츠 부족 등으로 중앙부처의 확정 계획이 없고 사업이 무기한 지연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장기간 제한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대상지는 당초 박물관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로 결정된 만큼, 도시계획시설 결정 목적이 상실된 만큼 공공공지¹⁾는 원래대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고 대부분 비오톱 1등급 지역인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1) 공공공지는 광진구에서 광장동 383번지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시 공공공지로 결정 (2003년 5월)하고 기부채납 받은 토지임.

〈위치도 및 항공사진〉



• 대상지는 천호대로변 자연녹지지역으로 인근에 연립주택 및 광장초중고 입지해 있음.

